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3
----------	-----

2019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21일, 김용석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하고 있음.

본 조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항을 서울시와 지방공기업은 의무로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하여 서울시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도록 함(안 제4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구입 및 임차)시 서울시와 지방공기업은 의무구매(100%) 대상으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이라 함) 제10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구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시(市)나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의무구매 비율 *연간 구매차량 대비(임차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70% ¹⁾ 이상 이중 전기·연료전지자동차 80% 이상	·19.1.1~20.12.31 : 저공해 70% 이상 ·21.1.1~ : 저공해 80% 이상

1) 환친차법 시행령 '16.6.30 시행 : 50% 이상
환친차법 시행령 '18.1.1 시행 : 7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확대(안 제4조)

-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서울시 공용차량에 대해서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0% 이상, 이중 전기·연료전지자동차를 8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안 제4조제1항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매 비율도 현행 70% 이상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임.

이는 환친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방공기업²⁾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의무구매 비율을 100%로 강화하는 것 또한 환친차법 및 현 서울시 정책에 부합³⁾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제3항은 출자·출연기관을 환친차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저공해자동차⁴⁾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단순 권고하기 보다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市), 지방공기업의 경우와 같이 100% 의무구매 대상으로

2) 지방공기업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18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현황을 보면, 5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총 85대 중 32대 구매(38%)로 의무구매 70%를 충족하지 못했음)

3) 현행 상위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이 70%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가 100%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

4) 저공해자동차 범위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됨(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수 정(안)
의무구매 대상 및 비율	서울시, 70% 이상	서울시 및 지방공기업, 100%	서울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100%
의무구매 권고 대상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

- 안 제4조제2항은 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대수(5대) 이하 보유기관, 특수차량(견인, 구난작업 등), 승합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구매 및 임차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참 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18년 구매현황

기관명		보유현황 ('18.12월 기준)			'18년 구매현황			
		소계	일반차	친환경차	소계	일반차	친환경차	비율(%)
서울시		474	207	277	75	5	70	93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13	9	4	-	-	-	-
	서울시설공단	109	68	41	12	4	8	8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2	5	7	-	-	-	-
	서울주택도시공사	130	94	36	85	53	32	38
	서울에너지공사	20	11	9	4	-	4	100
합계		284	187	97	101	57	44	43
출자·출연기관	서울연구원	6	4	2	-	-	-	-
	서울산업진흥원	9	7	2	5	2	3	60
	세종문화회관	6	6	0	2	1	1	50
	서울문화재단	6	3	3	4	3	1	25
	서울디자인재단	6	-	6	-	-	-	-
	서울의료원	5	2	3	-	-	-	-
	시립교향악단	2	1	1	-	-	-	-
	서울장학재단	-	-	-	-	-	-	-
	서울신용보증재단	2	-	2	1	1	-	0
	서울여성가족재단	3	2	1	2	1	1	50
	서울시복지재단	3	3	-	-	-	-	-
	평생교육진흥원	1	1	-	1	1	-	0
	50플러스재단	1	1	-	-	-	-	-
	디지털재단	1	1	-	-	-	-	-
	120다산콜재단	1	1	-	-	-	-	-
	공공보건의료재단	1	1	-	1	1	-	0
	서울기술연구원	1	1	-	-	-	-	-
서울관광재단	3	1	2	1	-	1	100	
합계		57	35	22	17	10	7	41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 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및 예외사항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동차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 의무 구매 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자동차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 의무 구매 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출자·출연기관이 자동차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4. ----- ----- ----- ----- ----- ----- ----- ----- -----.	4. (개정안과 같음)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5. ~ 6. (개정안과 같음)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생략)

② (생략)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1. 영 제18조의4제1호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 영 제18조의5제1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영 제19조-----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를 “영 제18조의4제1호”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을 “영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를 “영 제1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5. ~ 6. (생략)</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p>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
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
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2. (생략)

② (생략)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
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삭제>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1. 영 제18조의4제1호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
----- 영 제18조의5제1항-----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 영 제19조-----

-----.

② (현행과 같음)